

■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[별표 17의2] <개정 2023. 9. 1.>

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기재사항(제27조의2제2항 관련)

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는 국제해사기구(IMO)의 “기름오염방지를 위한 매뉴얼(Manual on Oil pollution, Section I, Prevention)” 및 국제해운회의소(ICS)와 국제석유회사해사평의회(OCIMF)의 “선박대선박 석유이송을 위한 지침서(Ship-to-Ship Transfer Guide, Petroleum)”를 참조하여 작성하고,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 조건에 관한 사항

- 가. 사용되는 연결구의 규격에 관한 사항 및 호환되는 연결구에 관한 사항
- 나.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장소 관할청으로부터 승인된 사항
- 다.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을 위한 해상조건

2. 안전에 관한 사항

- 가. 안전훈련에 관한 사항
- 나. 작업 단계별 점검표
- 다. 위험사항 발생 시 조치
- 라.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 중 안전에 관한 사항
- 마. 그 밖에 당직 및 헬리콥터 운용에 관한 사항

3. 의사소통에 관한 사항

- 가. 사용언어
- 나. 선박의 접근, 계선, 분리(unmooring) 및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작업 중의 통신에 관한 사항
- 다. 통신장애 시 대응절차

4.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작업준비에 관한 사항

5. 선박의 조종 및 계선에 관한 사항

- 가. 추진하는 두 선박을 나란히 옆으로 대기 위한 조종절차
- 나. 한 선박이 묘박중인 경우의 조종절차
- 다. 계선 준비에 관한 사항

6.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작업에 관한 사항

- 가. 이송전 절차
- 나.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작업에 대한 책임에 관한 사항

- 다.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을 위한 계획
 - 라.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
 - 마.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 후 작업에 관한 사항
7. 선박분리(unmooring) 절차 및 점검사항
8.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작업에 필요한 장비에 관한 사항
- 가. 완충장치, 호스, 계선설비, 조명, 현측사다리 및 보조장치 등에 관한 사항
 - 나. 장비의 대표적인 목록
9.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